

간호학과 교직과정 운영세칙

제정 2026. 04. 13.

제1조(목적) 본 운영세칙은 경동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) 간호학과(이하 ‘학과’)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기준·절차·책무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직과정위원회의 설치 및 명칭) 학과 교직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대학 교직과정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장은 교직상담 전담교수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은 학교현장실습 담당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(위원장 1인 포함)으로 구성하여 학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은 간호대학장이 위촉한다.

④ 간사 1인을 두며, 회의 준비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.

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의 임면 또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본 대학교 「교직과정 이수 규정」의 준수 및 점검
2. 학과 교직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과 개선 및 이행 점검
3. 교직과정 상담실 업무 전반에 관한 점검 및 개선
4. 학교현장실습 운영 및 개선

제6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·보관하며, 주요 의결사항, 담당자, 이행기한 및 후속조치 결과를 명시하여 교수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7조(위원회 회의) 위원회 회의는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8조에 따른다.

제8조(위원회 회의록) 위원회 회의록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9조에 따른다.

제9조(교직이수학생 지원) ① 위원회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교육역량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포함한 교직 적성 진단 및 상담
2. 학업 및 진로상담,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
3. 수업참관, 수업실습, 교육봉사 등과 관련된 실습기관 연계 및 배치 지원
4. 교직이수 요건 및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이수관리
5. 교직 이수 예정자 및 이수자 대상 포트폴리오 관리 및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, 특강 개최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과정 상담실을 운영하며, 전담교수는 학생 개별 상담 결과 및 교육적 요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, 운영 결과를 기록·관리한다.

③ 위원회는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생, 실습기관, 전공 지도교수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지도체계를 마련하고, 실습 결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질 개선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; 이하 'CQI')을 시행한다.

제10조(교직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) ①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1. 학과 일반회계 예산
2. 교수학습센터 예산
3. 학생상담센터 예산

② 제1항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교직과정 운영 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.

1. 교직과정 상담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
2.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
3. 학교현장실습 지원 및 실습기관 연계 활동
4. 교직이수학생 대상 워크숍, 특강, 포트폴리오 제작 등 역량강화 활동

③ 예산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의 예산 집행 기준 및 관련 부서의 지침을 따르며, 집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1조(성과평가 및 질 개선) ① 위원회는 매년 성과평가 및 지속적인 질 개선(CQI)을 실시하며, 목표 대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.

② 성과평가에는 프로그램 운영실적, 참여율, 만족도,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, 개선 과제별 담당자·이행 기한·확인 방법을 포함한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며,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
제12조(보고서 및 자료관리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연 1회 이상 작성·관리한다.

1. 부서별 운영계획서
 2. 부서별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
 3. 교직과정 이수체계도, 학년·학기별 편성표, 학습성과 연계 자료 등
- ② 해당년도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자체 진단 보고서 및 부록을 작성한다.

제13조(준용)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6조에 따른다.

제14조(운영세칙 개정)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7조 제2항에 따른다.

부 칙

본 운영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,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.